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82
------------	------

제출일자 : 2017. 12.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 배포(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1880(2017.4.7.))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기반 마련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주요 공익신고자 보호 정책 방향과 공익신고 접수·처리를 구축, 운영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추가
- 나. 기업에 대한 지원 책무 추가
- 다. 예방 조치 의무화
- 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됨을 명시
- 마.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근거 신설
- 바. 환경조성사업 대상 교육 실시 등 추가
- 사.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참조
- (2) 성별/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7. 09. . ~ 2017. 10. .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선정된”을 “지정된”으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달성군”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달성군

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5장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군수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p>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단서신설></p> <p>② (생략)</p>	<p>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7조의2(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달성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p>
<p>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p> <p>①(생략)</p>	<p>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p> <p>①(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구성)</p> <p>① ~ ⑤(생략)</p> <p><신 설></p>	<p>제10조(구성)</p> <p>① ~ ⑤(현행과 같음)</p> <p>⑥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p> <p>① · ②(생략)</p> <p><신 설></p>	<p>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p> <p>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p> <p>① 군수는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p>

제15조(민간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2 · 3 (생략)

제16조 ~ 제18조 (생략) .

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

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항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 대상 지원·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표창의 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관계자료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자체 규정 제·개정 요청

1.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각급 기관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자체 규정 제·개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과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불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귀 기관의 운영지침은 금년 8월 말, 조례는 10월 말까지 제·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의 불임자료(표준안)는 ’16.4.20. 기 송부한 바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 배포’ 문서의 불임자료(표준안)와 동일하며, 이를 반영하여 이미 자체 규정 제·개정을 완료한 기관에서는 추가적인 제·개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후 별도 공문을 통하여 자체 규정의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오니 기간 내에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경우 지표 B-3-3-①의 평가에 반영됩니다.

불임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 1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행동강령과

조사관

협조자

전결 2015. 9. 17.
행동강령과장

시행 행동강령과-2077 (2015. 9. 17.) 접수 기획감사실-10509 (2015. 9. 18.)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 <http://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678 팩스번호 044-200-7942 / znlswja@korea.kr / 비공개(5)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